

회의 의사록

회의명	대학평의원회	회의장소	복음관 회의실													
회의일시	2019년 1월 14일	재적위원수	12명	출석위원수	12명											
출석자	의장 : 박종걸 의원 : 강규성, 이한영, 원영희 정해덕, 임환석, 최지은 신지수, 장인순, 최정권 김대진, 전소희 간사 : 신재윤	불참자	-													
		중도 퇴장자	-													
회의안건	1. 대학평의원회 의장 선출 2. 2018년 추경예산(안) 및 2019년 예산(안) 3. 학칙 개정(안)															
회의내용	박종걸 의장의 사회로 찬송가 488장을 부른 뒤 이한영 의원의 기도로 회의를 시작하다. 본 회의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심의 · 의결하다.															
	- 다 음 -															
	1. 의결사항 - 대학평의원회 의장 및 부의장 연임 : 박종걸 의장, 원영희 부의장															
	2. 자문사항 1) 2018년 추경예산(안) 및 2019년 예산(안) 의장이 김인화 평가감사실장에게 2018년 추경예산(안) 및 2019년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다.															
	[2018년 추경예산(안) 요약]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항목</th> <th>2018 승인예산</th> <th>2018 추경예산</th> <th>증감액</th> </tr> </thead> <tbody> <tr> <td>수입</td> <td>17,455,307,929</td> <td>16,107,151,735</td> <td>-1,348,156,194</td> </tr> <tr> <td>지출</td> <td>17,455,307,929</td> <td>16,107,151,735</td> <td>-1,348,156,194</td> </tr> </tbody> </table>				항목	2018 승인예산	2018 추경예산	증감액	수입	17,455,307,929	16,107,151,735	-1,348,156,194	지출	17,455,307,929	16,107,151,735	-1,348,156,194
항목	2018 승인예산	2018 추경예산	증감액													
수입	17,455,307,929	16,107,151,735	-1,348,156,194													
지출	17,455,307,929	16,107,151,735	-1,348,156,194													
	<수입부 요약>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대학원 수업료 및 평생교육원 단기수강료 수입 등 등록금 수입 11억 7백만원 감소 2) 경상비전입금 및 법정부담전입금 1억원 증가 3) 국가장학금 2유형 지원금 감소로 인한 전입 및 기부금 수입 3억원 감소 4) 일립생활관 및 로고스홀 대여료 및 사용료 1천 1백만원 감소 5) 임의장학기금인출 1억9천5백만원 증가, 임의기타기금인출 2억7천6백만원 감소 															

<지출부 요약>

- 1) 교수사임 및 직원채용, 시간강의료 지출 감소에 따른 교원 및 직원 보수 6억5천5백만원 감소
- 2) 평생교육원 사업활성화로 인한 일반용역비 2억7천5백만원 증가
- 3) 국가장학금 2유형 지원금 감소로 인한 교외장학금 3억 6백만원 감소
- 4) 학과발전기금 및 장학기금 적립액 증가로 인한 기금적립액 4천 9백만원 증가
- 5) 기계기구 및 집기비품매입 예산 축소에 따른 고정자산매입지출 2천7백만원

정해덕 의원 : 현재 대학의 적립금 현황은 어떠한가?

김인화 실장 : 2019년도에 장학기금 5천만원을 인출하는 것으로 소진되었고, 연구기금도 거의 소진된 상황이다. 건축기금의 경우 아직 상환해야 할 금액이 남아 있기 때문에 약 2억원 정도 남아 있는 상황이다.

최정원 의원 : 대학 적립금의 종류는 무엇이 있는가?

김인화 실장 : 적립을 할 수 있는 기금은 총 4가지로 장학기금, 건축기금, 연구기금, 기타 기금이 있다. 기타기금에는 각 학과별기금이 포함되어 있다.

박종걸 의원장 : 2018년도 추경예산(안)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질의사항이 있는가? 없으면 동의 및 제청을 해달라.

이에 최정원 의원의 동의와 정해덕 의원의 제청으로 원안대로 승인하다.

[2019년 예산(안) 요약] 2019년 예산

항목	2018 추경예산	2019 예산	증감액
수입	16,107,151,735	17,788,285,639	1,681,133,904
지출	16,107,151,735	17,788,285,639	1,681,133,904

<수입부 요약>

- 1) 학부수업료 및 평생교육원 단기수강료 등 등록금 수입 8억 5백만원 증가
- 2) 경상비전입금 및 법인전입금 수입 9천만원 증가
- 3) 자율개선대학 선정으로 대학혁신지원사업비 13억 증가 추산
- 4) 주차장 시설 개선 등으로 인한 교육부대수입 3천만원 증가
- 5) 임의장학기금인출 등 임의기금인출액 3억 7천만원 감소

<지출부 요약>

- 1) 인건비 인상분 및 신규교원 임용으로 인한 인건비 9억원 증가
- 2) 평생교육원 활성화로 인한 시간강의료 3억원 증가
- 3) 엘리베이터 개축 및 대학혁신사업 시스템 구축을 위한 고정자산매입지출 3억8천6백만원 증가
- 4) 차입금 상환액 감소에 따른 유형고정자산매입비 2억1천8백만원 감소

박종걸 의원장 : 자율개선대학 선정에 따른 국고지원금은 인건비로 사용이 가능한가?

김인화 실장 : 인건비로 사용할 수는 없고 교육비로만 사용해야 한다. 다만 대학혁신사업과 관련한 신규 채용에 대한 인건비는 사용할 수 있다.

박종걸 의원장 : 2019년도 인건비 인상과 관련하여 인건비 인상을은 대학평의원회에서 결정되는가?

김인화 실장 : 인건비 인상을은 교무위원회에서 결정하고 대학평의원회에서 심의한 후에 법인 이사회에서 승인한다.

김대진 의원 : 2019년 예산(안) 수입부에서 주차장 시설이 개선된다는 것은 시설이 추가되는 부분이 있는 것인가?

김인화 실장 : 주차장 바리게이트에 대한 시설을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주차장을 관리하지 않는 시간대에 가끔 바리게이트가 오픈되어 있어서 주차료 결제 없이 출차를 하는 차량이 있는데 이 부분을 개선하면 수입이 증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대진 의원 : 지출부에서 건물매입비가 증가된 사유는 무엇인가?

김인화 실장 : 엘리베이터 개축을 위한 예산편성 시 계정과목이 건물매입비로 편성되기 때문에 증가된 것이다.

박종걸 의원장 : 2019년도 예산(안)과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논의해야 하거나 질문사항이 있는가? 없다면 동의 및 제청을 해달라

이에 강규성 의원의 동의와 임환석 의원의 제청으로 원안대로 승인하다.

2) 학칙 개정(안)

- 가. 제11조(입학자격)의 조항은 기존의 내용으로 하되 4항의 문구를 “기독교 대학의 특성에 의하여 세례받은 자 또는 세례예정자”로 정정
- 나. 제15조의 제목 및 내용에서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를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 및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로 정정
- 다. 제52조(학생활동)의 조항을 1항 “학생은 총학생회 등 학생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2항은 삭제, 3항 “총학생회 등 학생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4항 “학생은 동일한 목적을 추구하기 위하여 동아리 등 학생단체 활동을 할 수 있으며, 학생단체 활동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로 정정
- 라. 제54조(학생활동 금지)의 조항은 기존의 내용으로 하여 “...개인 또는 집단적 행위로 교육목적에 위배되는 종교단체 가입 및 활동을 할 수 없다”로 정정
- 마. 제55조(간행물)은 삭제하지 않음
- 바. 나머지는 원안대로 승인

김대진 의원 : 제11조(입학자격)에서 1항 4호에 기독교 대학의 특성에 의하여 세례받은 자 또는 세례예정자로 명시되어 있는데 2019년도에 학칙 개정안이 확정이 되면 2019 수시 신입생들부터 적용되는 것인가?

김인화 실장 : 세례 받은 자는 세례증서를 제출하고 세례를 받지 못한 학생들은 학교에 입학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세례를 받겠다는 약속을 하고 입학하는 것이다. 현행에서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김대진 의원 : 장학 및 학생복지 지도위원회가 임명되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52조(학생활동)에서 2항이 삭제된다면 위원회도 없어지는 것인가?

김인화 의원 : 장학 및 학생복지지도위원회가 없어진 것은 아니다. 제52조 2항의 내용은 학생활동보다는 학생지도를 위한 장학 및 학생복지지도위원회를 둔다는 내용 이기에 제52조(학생활동)에서 제53조(학생지도)로 조항을 옮긴 것이다.

이에 강규성 의원의 동의와 전소희 의원의 제청으로 원안대로 승인하다.

의장이 임환석 의원, 신지수 의원, 최지은 의원을 간인 서명자로 선임을 제안하다. 이에 원영희 의원의 동의와 이한영 의원의 재청으로 3명을 간인 서명자로 선임하다.

의장이 다른 안건 혹은 의견이 있는지 묻자 의견이 없음으로 최정권 의원의 기도와 주기도문으로 회의를 마치니 오후 5시 10분이 되다.

회의록 작성자 기획팀 신재윤 주임

2019년 1월 14일

회의록
내용
확인

의장 박종걸

부의장 원영희

의원 강규성

이한영

정해덕

최정권

의원 임환석

최지은

신지수

의원 장인순

최정권

의원 김대진

전소희

n c / 이사장